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제2026-223호

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재공고

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공고(공고 제2026-207호, 2026. 10. 1.)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,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금융 업무를 취급할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3일

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

1. 개요

○ 건 명: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금융기관 선정(재공고)

○ 약정기간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○ 지정금융기관의 수: 1개

○ 재공고 사유: 최초 공고(제2026-207호)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

2. 선정 방법: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·평가하는 경쟁방법

3. 참가 자격

○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

○「지방회계법」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

-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
-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
-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
-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
-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○ 진흥원 회계 시스템-은행CMS와의 연동체계 구축이 가능한 금융기관

*** 세부 참가자격은 제안 요청서 참고**

4. 제안서 신청 접수 및 제출서류

- ○ 접수 기간: 2026. 11. 4.(수) ~ 11. 13.(금) 18:00
- ○ 제출 장소: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경영기획부(제주시 서사로 43, 4층)
- ○ 제출 서류: ‘제안 요청서’ 참조
- ○ 제출 방법: 방문접수에 한함

5. 심의 및 평가방법

- ○ [별첨 1] 세부평가항목 내역, [별첨 2]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표에 따라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금융기관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
- ○ 위원회는 지정금융기관으로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

6. 기타사항

- ○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함에 따라 자료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
- ○ 제출된 서류(제안서 등)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
 - 단, 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
- ○ 금회 선정된 지정금융기관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함
- ○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(진흥원 회계 시스템-은행 CMS와의 연동체계 구축 등)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
- ○ 지정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- ○ 재공고에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, 적격 여부(총점 85점 이상) 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 - 적격 여부는 위원이 세부항목별로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평가항목별로 우수(배점의 100%), 보통(85%), 미흡(70%)으로 평가

❍ 동일 금융기관이 최초 공고와 재공고 2번 모두 참가 신청한 경우, 1차 제안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1차 제안서로 평가

- 최초 공고(제2026-207호)에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재공고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1차 제안서로 평가에 참여함

❍ 기타 문의사항: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경영기획부(☎ 064-726-9972)

[별첨 1] 세부평가항목 내역

세부평가항목 내역

Ⅰ. 일반원칙

1.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로 나누어 배점을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음.
2.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70%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10%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함.
3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구간별로 절대평가하며, 구간 간 점수 편차는 제2호의 순위 간 점수 편차와 동일하게 적용함
4.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은 현금으로만 구성된 협력사업비를 평가하며, 기존 협력사업 실적은 배제하고 계획으로만 평가함.

Ⅱ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20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(5점)

◦평가 기준: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구간별로 절대평가

※ 다만,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

◦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의 신용등급을 다음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하되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등급은 각 기관의 등급체계를 상호 대응시켜 적용
- 1등급(AAA 또는 이에 상당하는 등급) 5.00점, 2등급(AA+~AA-) 4.50점, 3등급(A+~A-) 4.00점, 4등급(BBB+ 이하) 3.50점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15점)

◦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
◦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- 총자본비율 (안정성, 6점)

※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(안정성 6점)로 평가

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 5점)
- 총자산순이익률 (수익성, 2점)
-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유동성, 2점)

※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유동성비율(유동성, 2점)로 평가

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융감독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

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

2. 진흥원에 대한 예금 금리(20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 금리(15점)

◦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(1개월 이상) 만기 시 적용금리 수준을 비교·평가 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수시입출금 예치 금리(5점)

◦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 예치 금리 수준을 비교·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3.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(10점)

가. 관내 지점의 수(7점)

◦금융기관이 제출한 관내 지점의 수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(2점)

◦금융기관이 제출한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다. 관내 이동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(1점)

◦금융기관이 제출한 관내 이동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4.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 능력(17점)

가. 자금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 보안 관리 능력(10점)

◦자금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및 전산보안 관리능력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

나.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(7점)

◦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능력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(17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(15점)

◦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※ 진흥원과의 기존 지정금융기관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실적은 제외

나. 진흥원과 협력사업계획(2점)

◦지정금융기관 약정기간 중 진흥원에 출연할 협력사업비(현금에 한함) 계획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6. 기타사항(16점)

가. 진흥원 회계 시스템-은행과의 연동 체계 구축 및 관리 계획(8점)

◦진흥원 회계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의 연계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예금금리 우대 조건 및 보완 방안(8점)

◦약정기간 동안 진흥원 예치금에 적용할 우대금리의 적용 범위, 적용 조건, 만기 재예치, 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, 시장금리 변동 시 금리 보장 방안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[별첨 2]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표

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표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점수			
	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 이하
합 계	**100**	**100**	**90.00**	**80.00**	**70.00**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**20**	**20.00**	**18.00**	**16.00**	**14.00**
1.1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5	5.00	4.50	4.00	3.50
1.1.1. 국내평가기관	5	5.00	4.50	4.00	3.50
1.2. 주요 경영지표 현황	15	15.00	13.50	12.00	10.50
1.2.1. 총자본비율(안정성)	6	6.00	5.40	4.80	4.20
1.2.2.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5	5.00	4.50	4.00	3.50
1.2.3. 총자산순이익률(수익성)	2	2.00	1.80	1.60	1.40
1.2.4.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)	2	2.00	1.80	1.60	1.40
2. 진흥원에 대한 예금 금리	**20**	**20.00**	**18.00**	**16.00**	**14.00**
2.1. 정기예금 예치 금리	15	15.00	13.50	12.00	10.50
2.1.1.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2	2.00	1.80	1.60	1.40
2.1.2.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3	3.00	2.70	2.40	2.10
2.1.3.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3	3.00	2.70	2.40	2.10
2.1.4. 12개월 이상	7	7.00	6.30	5.60	4.90
2.2. 수시입출금 예치 금리	5	5.00	4.50	4.00	3.50
3.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	**10**	**10.00**	**9.00**	**8.00**	**7.00**
3.1. 관내 지점의 수	7	7.00	6.30	5.60	4.90
3.2.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	2	2.00	1.80	1.60	1.40
3.3. 관내 이동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	1	1.00	0.90	0.80	0.70
4.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 능력	**17**	**17.00**	**15.30**	**13.60**	**11.90**
4.1. 자금·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	10	10.00	9.00	8.00	7.00
4.2.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	7	7.00	6.30	5.60	4.90
5. 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	**17**	**17.00**	**15.30**	**13.60**	**11.90**
5.1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15	15.00	13.50	12.00	10.50
5.2. 진흥원과 협력사업계획	2	2.00	1.80	1.60	1.40
6. 기타사항	**16**	**16.00**	**14.40**	**12.80**	**11.20**
6.1. 진흥원 회계 시스템-은행과의 연동 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	8	8.00	7.20	6.40	5.60
6.2. 예금금리 우대 조건 및 보완 방안	8	8.00	7.20	6.40	5.60